

국립정동극장 종합감사 결과

가. 감사개요

▣ 감사기간 : 2022. 12. 7. ~ 12. 20. (10일간)

▣ 감사반 : 감사담당관 등 9명 (실지감사)

▣ 감사내용

- 2019년부터 2022년 12월까지 국립정동극장이 수행한 주요사업 및 기관운영 업무 전반

나. 감사결과

▣ 총괄표

(단위: 건, 명, 천원)

합계			문책 (인원)	시정 (금액)	주의 (인원)	개선	권고	통보				수사 요청	현지 조치
건수	금액	인원						계	일반	인사	모범 사례		
14		3	1 (1)		7 (2)			3	3			3	

※ 첨부서류 : 감사처분 요구내용 1부.

■ 세부내역

연번	지 적 내 용	조 치 사 항
1	<p>○ 공모사업 심의위원 위촉방식 및 사업관리 등 부적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‘청년 국악인큐베이팅 청춘만발 사업’과 ‘기획공연 창작 ing 시리즈 사업’을 공모 방식으로 추진하면서 ▲국민권익위원회의 「공공기관 심의위원회 의사결정의 공정성·투명성 제고」 권고에 따라 외부 심의위원은 후보군(위원 pool)을 구성한 후 무작위 추출 방식을 통해 위촉하고, 심의위원의 반복 위촉을 제한하여야 하는데도 내부 회의만으로 심의위원을 위촉하거나, 동일 심의위원을 연속하여 위촉 ▲공모에서 선정된 이력이 있는 자에 대한 참가 제한 기준이 없어 동일 참가자가 연속하여 지원 대상자로 선정 ▲정동극장의 장기기획공연 (레퍼토리) 발굴을 목적으로 선정되어 제작 지원된 작품 (2018~2019년, 총 11개)에 대한 제공연 등의 활용방안 마련 미흡 등 지원사업 운영 부적정 	<p>○ 통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에 맞는 심의위원회 구성 방안과 공모사업 기수혜자에 대한 참가 제한 방안, 공모 선정 작품의 적극 활용 방안 강구
2	<p>○ 계약 관련 규정 미비 등 계약사무 처리 부적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자체 「회계규정」에 따라 물품 제조·구매, 용역,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▲계약 방식, 선금 지급 등에 대한 세부 기준 및 절차가 규정화되어 있지 않아 예정가격 산출이 가능한 용역을 사후정산 특수조건부 계약으로 체결하거나 선금이행 보증기간을 과소 설정 ▲계약관 등 회계 관계 직원에 대한 재정정보증 미가입 또는 미갱신 ▲계약부서를 통해 체결하도록 되어 있는 1천만 원 이상의 계약을 사업부서가 직접 체결 (총 94건, 계약금액 1,445백만 원)하는 등 계약사무 처리 부적정 	<p>○ 주의·통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계약 관계 법령과 다르게 계약사무를 처리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 철저 기관주의 - 계약 관계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체 회계규정 개정 방안 및 공연예술 기술지원 표준용역계약서 적극 활용 방안 강구
3	<p>○ 업무용 휴대전화기 및 차량 등 자산 관리 부적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자체 「고정자산관리규정」 및 「차량 관리규정」에 따라 업무용 휴대전화기 및 차량 등의 자산을 취득·운용하면서 ▲전 대표이사에게 제공한 업무용 휴대전화기를 자산관리 대장에 등록하지 않거나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분실된 휴대전화기에 대한 변상 책임 등 조치를 하지 않았고 ▲업무용 차량을 기관장의 출퇴근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사실상 전용 차량으로 운영하면서 차량 운행일지를 사실과 다르게 임의로 작성하거나 공휴일·휴무일에 법인카드로 집행한 주유비와 도로 통행료 등에 대해 사용 목적 및 적정 여부에 대한 점검을 하지 않는 등 자산 관리 부적정 	<p>○ 문책·주의·통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자산 및 업무용 차량 관리 업무 부당 처리, 법인카드 관리 소홀한 경영관리팀장 문책 요구(경징계) - 자산관리 업무 철저 및 업무용 차량 관련 업무 철저 기관주의 - 전 대표이사가 분실한 업무용 휴대전화기의 변상 방안 및 전 대표이사에게 명의 이전한 업무용 휴대전화기의 취득비용 반환 방안 강구

연번	지 적 내 용	조 치 사 항
4	<p>○ 예술단원 겸직 등 복무규정 위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정동극장 예술단의 무용단원(2인)은 ▲온라인 재능 거래 웹사이트를 통해 개인 교습(레슨) 희망자 모집을 시도하거나 ▲대표이사의 허가 없이 민간단체의 임원을 겸직하는 등 「단원 복무규칙」 및 「겸직허가 내부지침」 등 자체 복무 규정 위반 	<p>○ 주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자체 복무규정 위반한 무용단원 2인 개인주의
5	<p>○ 출장 등 복무 관리 부적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▲업무차량을 이용한 근무지 내·외 출장 시 업무차량 운행 일지 작성으로 출장명령을 갈음하거나 ▲정해진 근무 편성 계획을 임의로 변경하여 근무한 후 사후 승인을 받는 등 직원 복무 관리 부적정 	<p>○ 주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직원 복무 관리 업무 철저 기관주의
6	<p>○ 가족수당 지급 업무처리 부적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자체 「가족수당 세부 규칙」에 따라 가족수당은 직원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에 대해 지급하고 별거가족의 경우에는 별거사유의 불가피성(취학, 요양 등) 및 직원과의 동일 생계 여부 등을 확인하여 예외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별거하는 부모님 등 직계존속(2022년 12월 기준 69명)에 대해 별거사유나 동일 생계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의 검토 없이 가족수당 지급 	<p>○ 주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가족수당 지급 업무 철저 기관주의
7	<p>○ 공연장 무대시설 등 안전점검 미흡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공연법」 등에 따라 무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 하면서 ▲3년마다 실시하는 정기 안전검사에서 보수가 필요하다고 연속하여 지적받은 사항(2019년, 2022년)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지연하거나 ▲매년 관련 법령에 정해진 검사 부위별 검사기준·검사범위·검사방법 등에 따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자체 안전검사를 공연 전 무대장비 정상 작동 여부만 확인하는 등 시설 안전관리 부적정 	<p>○ 주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무대시설 안전점검 및 공연장 시설관리 업무 철저 기관주의
8	<p>○ 사무실 임차 공간 채권보전 미조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보증금과 월 임차료를 내고 예술단원 연습실과 사무공간을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예술단원 연습실에 대한 보증금(400백만 원)은 정기예금 질권설정 방식으로 채권보전 조치를 한 반면 사무공간에 대한 보증금(50백만 원)은 전세권 설정 등 적절한 채권보전 조치 미이행 	<p>○ 주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무공간에 대한 전세권 설정 등 채권보전 조치 방안 강구하는 등 관련 업무 철저 기관주의